

2026년 제1회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2월 11일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 채용분야 : 청원경찰 한시임기제 공무원
나. 채용인원 : 총 1명(결원자 대체)
- 채용일로부터 2026. 12. 17.까지

연번	채용분야	선발 인원	근무처 주소	연락처	근로계약기간
1	청원경찰 (한시임기제)	1명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39 (마도면 슬항리 215-7)	031-8055-7013~4	채용일 ~ 2026.12.17.

- ※ 기관 사정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계약 종료
- 다. 담당업무 : 청사방호 및 경비, 민원안내, 보호소 내 질서유지, 기타 청원주가 지정한 업무
라. 근무형태 : 주·야간 교대근무(4교대, 주-야-휴-비)
- 주간 : 09:00 ~ 18:00,
- 야간 : 18:00 ~ 익일 09:00
※ 화성외국인보호소 업무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결원보충
사유가 없다면 당면 퇴직함
- 마. 보수수준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름

2

응시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최종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다. 신체조건(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 ※ 위 조건 이외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함

라. 학력·거주지 : 제한 없음

마.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심사 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시험 방법

- 병역관계, 연령 등 임용자격 요건 및 자격증 소지여부,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등 서류전형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의 합격자와 불합격자 결정하여 공고

※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자 중에서 자격증 등 가산 점수의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

○ 평가항목

배점 항목 및 내용(50점 만점)							
무술 유단증 (단증 합산 적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 (전직경찰, 청원경찰, 경비업체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		관련학과 졸업 (경찰, 경호, 안전, 경비 전공분야)		자 격 증 (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배점	단별	배점	기간별	배점	학년	배점	자격증별
15점	4단 이상	15점	5년 이상	10점	4년제 졸업	10점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1급
12점	3단	10점	3년 이상~ 5년 미만			8점	일반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2급
9점	2단			5점	3년제 이하 졸업	6점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6점	1단	5점	1년 이상~ 3년 미만			4점	응급구조사 2급

※ 공인무도 단증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근무경력 중 군경력은 제외하며, 경비업체 경력은 경비업법의 허가받은 업체 경력에 한해 인정

※ 관련학과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채용 담당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 무도분야 단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공인무도 단종 인정단체(60개)】

구 분	단 체 명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0)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0)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회, ITF태권도협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나. 제2차 시험 : 체력평가 및 면접시험

- 시험대상 :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전형방법 : 체력평가(20%), 면접평가(80%) 합산
- 체력평가 방법 : 체력측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체력인증서로 체력평가 대체

■ 배점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	미제출
점수	20	17	14	10	0

■ 체력인증서 제출

- 제출일: 면접평가 당일 제출

※ 2026. 2. 10.(인증일 기준) 이후 체력인증서(평가내역 포함)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

- 주의사항 : 면접평가 당일 체력인증서 원본(평가내역 포함, 사본 불인정) 제출 시에만 점수 인정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서 발급 방법** ❖

1. 응시자 주소지 관할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 체력인증센터에 개별 사전예약
2. 체력인증센터 방문 및 체력 측정
3. 체력인증서(평가내역 포함) 발급, 재발급 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http://nfa.kspo.or.kr>)
-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바코드, 직인, 워터마크가 삽입·출력된 경우만 인정
4. 유의사항 : 다수 응시자 측정 및 센터 운영변경 등의 사유로 응시자 개인별 희망하는 측정일자 또는 시각의 선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체력인증센터에 사전문의 후 예약 필수

○ 면접 평정방법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배점기준

면접평정	상	중	하
점수	16점	10점	4점

■ 면접 평정요소

- 가.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4 최종합격자 결정

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2차 시험 체력평가와 면접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동점자 발생 시 “가” 항목부터 차례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함

○ 최종합격자 배치여부는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추가 합격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임용승인이 안될 경우, 차점자로 임용승인 신청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 순위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 가산요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채용인원이 1명이므로, 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3항에 따라 가점 합격자는 0명으로 함

5 시험일정

채용분야	공고기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청원경찰 (한시임기제)	'26. 2. 11.(수) ~ 2. 26.(목)	'26. 2. 24.(화) ~ 2. 26.(목)	'26. 3. 6.(금)	'26. 3. 11(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확정일자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시 개별 통보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일터 및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확인을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시간 : 2026. 2. 24.(화) ~ 2. 26.(목) 09:00~18:00 (3일간)

※ 점심시간(12:00 ~13:00) 및 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지참)**

다. 응시원서 접수처

채용기관	주 소	전화번호
화성외국인보호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화성로 739 (마도면 슬항리 215-7)	031-8055-7013~4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마. 응시수수료 : 없음

7 제출서류 : 편철 하지 않고 낱장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공통사항>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
2.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서 내려받아 작성) 【붙임 2】
3. 이력서 1부 【붙임 3】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 분야 근무경력만 작성
 -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됨.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기재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 【붙임 4】
5.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 날짜, 성명,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7.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6】

8.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7】
9.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8】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9】

<개 별 사 항(해 당 자)>

1. 응시관련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근무지별)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경력의 계산은 원서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력서 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해야 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모두 있는 원본에 한해 인정하며 누락 시 불인정 처리함
 -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모호할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야 함
 - ※ 경비업체 경력은 경비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만 인정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미 제출시 불인정)
 -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10】 활용
2.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1부
3.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 1부
4. 근무경력 확인서 1부 【붙임 11】

□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요건 □

(다음과 같이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입증된 사항만 인정함)

→ ①경력(재직)증명서

②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 이력확인서

③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이 모두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폐업으로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 발행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으로 증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는 입금기관이 표시된 급여 입금내역 추가 자료 반드시 제출(예: 2021년도 분 소득증명, 2020년 등 연도 중간에 퇴직한 경우 해당연도 분 소득증명)

※ 제출된 자료는 최종합격예정자에 대해서만 검증함

5.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무술유단자증 사본 1부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무도 공인 유단자는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가장 높은 것 합산

6. 최종 학력(졸업)증명서 1부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졸업증명서

7.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1부 【붙임 12】

- 졸업한 학과(학위)가 청원경찰 관련학과(학위)와 동일계통이나 명칭이 상이한 경우 제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 되면 임용이 취소됨

※ 출처 및 내용이 불분명한 증명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퇴직일 등 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나. 응시서류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생지, 학교명,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록한 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사. 경력증명 사본을 첨부한 응시자는 최종합격 후 임용 전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아. 본 공고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수시로 확인 바랍니다.

자.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응시요건에 지역제한은 없으나 시험 응시자에 대해 별도의 숙박비 및 교통비 등이 제공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기관 담당자(상기 응시원서 접수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 합격하지 못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4.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1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채용기관에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여부를 채용기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5.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까지 보관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 . .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한시인기제)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필 수	①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붙임 3】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제출 ☐ 미제출
	⑤ 주민등록표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1부 발급 - 초본에 병역사항 기재되지 않는 경우 군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 제출 ☐ 미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 제출 ☐ 미제출
	⑦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6】	☐ 제출 ☐ 미제출
	⑧ 공정채용확인서 【붙임 7】	☐ 제출 ☐ 미제출
	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8】	☐ 제출 ☐ 미제출
	⑩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9】	☐ 제출 ☐ 미제출
해 당 자	①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관의 재직경력증명서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붙임 10】작성 제출	☐ 제출 ☐ 미제출
	②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1부	☐ 제출 ☐ 미제출
	③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 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④ 근무경력 확인서 【붙임 11】	☐ 제출 ☐ 미제출
	⑤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무술유단자증 사본 1부	☐ 제출 ☐ 미제출
	⑥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1부	☐ 제출 ☐ 미제출
	⑦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 1부 【붙임 12】	☐ 제출 ☐ 미제출

※ □에 서류 제출 여부를 √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성명 : (서명)
화 성 외 국 인 보 호 소 장 귀 하

【붙임 2】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26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 한시임기제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응시분야	청원경찰(한시임기제)		한자	
응시기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생년월일		
주 소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부분)

※ 응시번호		응시기관	화성외국인보호소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화성외국인보호소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3】

이 력 서

□ 2026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 한시임기제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명			

□ 응 시 자 격				
관 련 분 야 근 무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시행처(자격 검증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이력서 작성 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경력 : 위에서부터 최근경력 순으로 작성

- 청원경찰 관련 경력만 기재, 보안 경비업무 등과 관련 없는 경력 기재 금지
- 작성 예 : (주)0000 / 2024.01.01. ~ 2025.12.31.(0년00개월) / 사원 / 경비
-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니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경력은 이력서에 기재 금지.

3. 학위 : 대학이상은 전공, 학위 취득일 및 학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기재

※ 고졸 이하의 경우 학위취득일에 졸업일, 학위 종류에 ‘고졸’, ‘중졸’, ‘초졸’ 기재

※ 출신 학교명 기재 금지(블라인드 채용)

자 기 소 개 서

○ 응시번호 :

○ 성 명 :

(소 개 내 용)

. . .

작성자 ○ ○ ○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학교명, 출생지, 생년월일,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성격, 장·단점 등 본인의 소개만 간단히 작성),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분량은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역사항,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학위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1) 제공 받는 자 :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 (2) 제공 목적 : 청원경찰 채용 및 관리
- (3) **제공 항목 :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 (4) 제공 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원경찰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u>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경력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경력, 자격증, 어학능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자료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제공받는 기관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응시생 제출 자료 발급 기관
- (2) 제공목적 : 제출자료 진위 확인
- (3) 제공하는 항목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자료
-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자료 제공 후 즉시 파기
-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효력인정 동의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한시임기제)로 채용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송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붙임 10】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경력 사항	근무기간		소속 (근무처)	직위 (직급)	담당업무 ①	주당근무시간	비고 ②										
	부터	까지															
상별 사항	포 상			징 계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연월일	종 류	시행청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증명기관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table border="1"> <tr> <td colspan="2">발급자</td> </tr> <tr> <td>소 속</td> <td></td> </tr> <tr> <td>직 급</td> <td></td> </tr> <tr> <td>연 락 처</td> <td></td> </tr> <tr> <td>성 명</td> <td>(인)</td> </tr> </table>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발급자																	
소 속																	
직 급																	
연 락 처																	
성 명	(인)																
① 담당업무 :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비 고 : 기타 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등 기재)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근무경력							근무기간			구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홍길동	'00.00.00	경찰	2011	1	1		2012	6	30	1	6	0	공무원
		○○ 기관	2015	7	1		2015	11	30	0	5	0	공공 기관
		○○ 은행	2021	2	1		2023	3	20	2	2	20	청원 경찰
		○○ 기업	2024	6	10		2025	5	25	0	11	15	경비 업체
		근 무 경 력 합 계	근무경력 전체를 말합니다.							5	1	5	
		* 구분 : 공무원, 공공기관(정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 청원 경찰, 경비업체 여부를 반드시 기재 및 확인 * 경력계산 : 1개월 = 30일, 1년=12월, 잔여일자는 해당연도 월력에 따라 계산함 * 근무경력이 있을 시, 예시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경력 확인서는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된 것에 한해 기록합니다.

20 . . .

작성자 :

(인/서명)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 시에는 반드시 2026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원경찰 채용시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서류 작성 시에는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류는 추천요구 학생소속 학과의 학과장과, 단과대학장을 경유하고 총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서류는 동일계통 학과 증명서류로 함께 사용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외국인보호소 관리과(031-8055-7013~4)으로 연락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외국인보호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